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 판 결

사 건 2021가단103198 소유권말소등기

원 고 [redacted]시

소송대리인 A, B, C

피 고 D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1. 4. 13.

##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E 사이에 2018. 6. 4.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E에게 [redacted]지방법원 보은등기소 2018. 6. 8. 접수 제622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판결)

판사 [redacted]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 청 구 원 인

1. 소외 E 에 대한 원고의 지방세 채권

피고 D 은 소외 E [ , 이하 ' E '이라 합니다]의 배우자이고[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 원고는 2012. 12.경 소외 E 에게 지방소득세 2건을 각각 부과 납부통지 하였고 지방세 체납에 대해 수차에 걸쳐 납부독촉 하였으나, 현재까지 위 체납건 총 59,608,34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갑 2호증 체납리스트(채권내역서)].

2. 이 사건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0다7783 판결 등 참조).

나. E 은 2018. 6. 8. 협의분할 상속으로 취득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취득 당일인 2018.6.8. 피고 D 과의 증여계약에 따라 청주지방법원 보은등기소 접수 제6229호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갑 제3호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다. E 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전하여 다른 재산이 없는 무자력 상태가 되었고, 이는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써 사해행위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피고는 E 의 배우자로서 E 의 채무관계에 관해 잘 알고 있으면서도 E 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므로 악의의 취득자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와 E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18.6.8.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써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3. 원상회복방법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써 E 에게 이 사건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4. 사해행위를 안 날

원고 소속 공무원은 2020. 8월경 E 의 피고에 대한 증여 사실을 알게 되어 고액 체납자인 E 의 사해행위 여부를 검토하고 가처분을 신청하여 2020.11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20카단52021호 가처분을 인용받았기에【갑 제4호증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 접수, 갑 제5호증 결정문】, 사해행위 취소를 위한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합니다.

5. 결론

이상과 같이 피고와 소외 E 사이에 체결된 청구취지 기재 증여계약은 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서 규정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자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1-06-08

# 별 지 목 록

[토지]

[redacted]북도 [redacted]군 [redacted] 답2878㎡ 끝.